

 보건복지부		보 도 자 료 1월 21일(월) 조간 (1.20. 12시 이후 보도)	
배 포 일	2019. 1. 18. / (총 7매)	담당부서	사회서비스사업과
과 장	조 경 숙	전 화	044-202-3220
담 당 자	정 상 희, 정 유 주		044-202-3224, 3228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!

-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로 확대, 지난해보다 3만7000여 명 더 혜택 예상 -

- ☐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*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(기준중위소득 80%→100%)한다고 밝혔다.

*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(영양관리, 체조지원 등)와 신생아의 양육(목욕, 수유지원 등)을 지원하는 서비스

<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>

구분		2018년	2019년	비 고
지 원 대 상	소득 기준	<u>기준중위소득 80% 이하</u> * (소득기준 예시) 3인가구: 295만 원, 4인 가구: 362만 원	<u>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</u> * (소득기준 예시) 3인가구: 376만 원, 4인 가구: 461만 원	
	인원	연간 8만 명 내외 * 전체 출생아의 22%	<u>11만 7000명</u> * 전체 출생아의 33%	전년 대비 3만7000여명 증가
정부지원금		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<u>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53만6000원</u> 지원	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<u>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</u> 지원	1인 평균 정부지원금 14.8% 증가
지원기간		태아 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(단축·표준·연장)에 따라 <u>최소 5일 ~ 최대 25일</u>		

- 산모·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.

* ('09~'14년)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% 이하 → ('15년)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% 이하 → ('16~'18년)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

- 이번 지원대상 확대(기준중위소득 100%)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,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.8% 증가할 전망이다.

-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.

-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, 출산(예정)일 증빙자료,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.
-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, 복지로,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*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* 홈페이지: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,
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

-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.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「산모·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」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 관리, 체조 지원, 신생아 목욕,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~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.

○ 특히,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에 문의하면 된다.

□ 한편,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“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” 결과를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* '18.2월 ~ 12월까지 SMS를 통해 3만 4644명이 참여, '19.2월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제공기관별 평가 점수를 공개 예정

□ 보건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“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<참고> : 1. 2019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
2. 2019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

참고 1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
□ 지원대상
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
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% 판정기준】

가구원 수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		
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(직장+지역)
2인	9만4808	7만5719	9만5962
3인	12만1528	11만5254	12만2961
4인	15만844	15만1910	15만2850
5인	17만7419	18만4185	18만259
6인	20만6091	21만9834	20만9942
7인	23만6255	25만7406	24만1925
8인	26만3711	28만7857	27만2807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
-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에 문의

* 희귀난치성질환·새터민·결혼이민·미혼모·분만취약지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, 쌍생아 이상·둘째아·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,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

- ☐ 신청기간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☐ 신청장소: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
*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☐ 신청자격: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
*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- ☐ 지원기간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(단축·표준·연장)에 따라 최소 5일~최대25일
- ☐ 지원내용: 산모건강관리(영양관리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목욕, 수유지원 등), 산모 식사준비, 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
- ☐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*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)
- ☐ 서비스 비용: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

구 분	단태아	쌍태아	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
일반 (1일 기준)	11만2000원	14만5000원	16만7000원

- ☐ 서비스 제공자
 - 제공기관: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
 - 제공인력: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「산모·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」을 수료한 사람
* (신규자 과정) 총 60시간(이론 24시간, 실기 36시간)
* (경력자 과정) 총 40시간(이론 12시간, 실기 28시간)

□ 정부지원금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구간, 이용자 선택(단축·표준·연장)에 따라 차등 지원

○ 본인부담금: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
【2019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】

(단위: 일, 천원)

구분				서비스 기간			서비스 가격			정부지원금		
				단축	표준	연장	단축	표준	연장	단축	표준	연장
단태아	첫째아	A-가①형	자격확인	5	10	15	560	1,120	1,680	491	840	1,134
		A-통합①형	100% 이하							432	739	998
		A-라①형	10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344	588	794
	둘째아	A-가②형	자격확인	10	15	20	1,120	1,680	2,240	1,009	1,294	1,552
		A-통합②형	100% 이하							888	1,138	1,366
		A-라②형	10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706	906	1,087
	셋째아 이상	A-가③형	자격확인	10	15	20	1,120	1,680	2,240	1,048	1,344	1,613
		A-통합③형	100% 이하							923	1,183	1,419
		A-라③형	10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734	941	1,129
쌍생아	둘째아	B-가①형	자격확인	10	15	20	1,450	2,175	2,900	1,408	1,805	2,166
		B-통합①형	100% 이하							1,239	1,589	1,906
		B-라①형	10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986	1,264	1,516
	셋째아 이상	B-가②형	자격확인	15	20	25	2,175	2,900	3,625	2,112	2,407	2,708
		B-통합②형	100% 이하							1,859	2,118	2,383
		B-라②형	10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1,478	1,685	1,896
삼태아 이상, 중증장애산모	구분 없음	C-가형	자격확인	15	20	25	2,505	3,340	4,175	2,433	2,772	3,119
		C-통합형	100% 이하							2,141	2,440	2,744
		C-라형	100% 초과(예외지원)							1,703	1,941	2,183

<주의사항>

※ 출산박람회,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·군·구(보건소)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1) 이용권(바우처) 자격판정은 시·군·구(보건소)에서만 가능합니다.
- 2) 시·군·구(보건소)에서 이용권(바우처)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.
- 3) 시·군·구(보건소)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·군·구(보건소)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(www.socialservice.or.kr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